

축산시설 소독효과 제고를 위한 ‘소독제 사용 개선방안’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1. 추진배경

- ◎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농가·축산시설 관계자가 소독제를 쉽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
 - 축산시설별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을 마련·홍보하고 제도 개선 추진
 - * 그간 가축전염병예방법령과 AI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통해 소독 의무과 요령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별 소독제 희석배수 등 사용방법과 속성 등에 대한 안내 미흡

2. 소독제 사용 개선방안

- ◎ **(표준수칙)** 올바른 소독약 사용을 위해 ‘표준 사용수칙’ 마련(붙임 1)
 - 소독 효과 제고를 위해 사용원칙을 정하고 시설별* 희석배수 기준 설정
 - *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부화장, 분뇨·비료공장, 가축시장, 계란 GP 등
- ◎ **(제도개선)** 고시·SOP 등에 소독제 세부 사용요령 보완
 - (고시) 약사법* 관련 고시(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기준) 개정** 추진(*19.6)
 - *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 등 대상에 소독제 추가(*18.12.11일 약사법 개정, *19.6.12 시행 예정), 사용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 * (개정안) 소독제에 표시된 사용대상, 용법·용량(권장 희석배수 등), 유효기간 등 준수
 - (AI SOP) 발생농장과 방역지역 내 소독요령(붙임 2) 보완, 가축 소유자 등이 ‘동물용 의약품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토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19년 하반기)
 - (소독제 표시) 사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제제 분류 등 표시사항 개선 추진
 - * 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업계 등과 협의하여 추진

3. 향후계획

- ◎ 소독 관련 개정된 규정과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교육·홍보
 - * 검역본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에서는 자체 교육자료 등에 포함하여 교육 실시

◎ 지자체(시험소)에 소독제 농도 검사기술 교육(검역본부)

◎ 소독 관련 고시와 AI SOP 등 개정 추진

붙임1 축산시설 등의 소독제 표준 사용수칙

1. 소독제 사용 원칙

- 유효기간이 경과한 소독제는 사용하지 않음
- 소독제별 부표의 권장 희석배수 준수(일반조건, 유기물조건)
 - * 유기물이 없도록 세척한 후 최소 일반기준 이상의 농도로 소독
- 다른 종류의 소독제와 혼합하지 않음(소독효과 저하 방지)
 - * 생석회 사용 농가 등 축산시설은 산성제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

2. 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별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사항

축산·방역시설	장소	희석배수	비고(소독대상 조건)
농장	농장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축사소독조	유기물조건	
	축사내외부	유기물조건	
도축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사료공장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부화장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분뇨·비료공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가축시장	출입구	유기물조건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계란 GP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거점소독시설	출입구	일반조건	세척한 경우
		유기물조건	세척하지 않은 경우
	발판소독조	유기물조건	
소독차량	도로, 철새도래지 등	유기물조건	

※ 동 수칙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법령·고시·SOP) 등에 따름

붙임2 발생농장 등에 대한 소독 요령(안) * AI SOP 개정안

1. 살처분 작업 전의 소독

- 농장 내의 마당, 농장 둘레와 계사 통로에 생석회를 살포하고 축사 내부(천장, 벽, 바닥, 통로) 및 오염물품에 소독제를 살포한다.
 - 축사 소독은 천장 → 벽 → 바닥 등 순으로 소독하고 축사 외벽을 소독한다.
- 소독제는 알칼리성인 생석회와 반응해 효과가 낮아지는 산성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살처분 완료 후 소독

- 살처분 가축 및 오염물품의 처리를 완료 후 「12. 청소·세척 및 소독요령」에 따라 신속하게 축사에 대해 4단계에 걸쳐 소독(청소, 세척·소독,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3. 주변농장(방역대내) 소독

-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 한 후 출입시 소독을 실시한다.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이나 기구 등은 반드시 소독한다.
- 농장 마당과 축사 주위에 생석회를 살포한다.
- 축사 출입구에는 소독제 농도는 유기물 조건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소독제는 알칼리성인 생석회와 반응해 효과가 낮아지는 산성 소독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